

재해영향성검토 용역  
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 
《작성요령포함》

2022. 11.

국 토 교 통 부  
철 도 건 설 과

## I. 과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작성지침

### 1. 작성지침 성격

본 지침은 철도건설과에서 시행 예정인 재해영향성검토 입찰 참가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(고시금액미만의 용역 적격심사)에 필요한 평가자료의 작성 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안내사항을 정한 것임.

### 2.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대상 사업

용역명	용역사업 주요내용	용역금액(원)	용역예정 기간(개월)	비고
호남선 고속화(기수완·논산) 건설사업 재해영향성검토	재해영향성 검토 1식	37,000,000	12	

### 3. 낙찰자 선정방법

#### 가. 입찰참가 자격기준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 등록된 자이며,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고,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. 다만,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#### 나. 낙찰자 선정방법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2조 및 「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(국토교통부 훈령 제965호, `18.1.4.)」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사업수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기준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

### 4. 과업내용 : 별도의 “(용역설계서)과업지시서”에 의함

## II.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

### 1. 개요

본 평가기준은 철도건설과에서 시행 예정인 재해영향성검토용역 사업

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기준이다.

## 2.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방법

재해영향성검토용역 낙찰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국가계약법”이라 한다) 시행령 제42조제1항,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38조,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, 「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(국토교통부 훈령 제965호, '18.1.4.)」에 따라 우리 과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세부사항은 Ⅲ항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.

## 3. 평가의 기본 원칙

- 가.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는 이 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적격심사기준은 「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(국토교통부훈령 제956호, '18.1.4.)」에 의한다.
- 나.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 계산은 **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** 하고,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- 다. 적격평가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되, 제출 자료의 사실입증을 위해 관련협의 및 소관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제출된 자료 중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으며 입증자료가 없는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.
- 라. 평가자료 제출한 서류를 위조, 변조, 허위 등 부적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.
  - 1)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.
  - 2)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- 마.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(평가대상)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,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,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. 다만, 퇴직,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

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·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, 반드시 우리 과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지정,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다.

바. 적격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.

사. 제출된 경력 및 실적자료 중 사업명이 불확실하거나 사업 대상물의 판별이 불확실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. 다만, 사업명 및 사업 대상물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첨부된 경우는 그 자료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.

아.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 계약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#### 4. 평가위원회 구성

가. 적격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실시하며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.

나.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- 1) 평가기준 또는 평가기준 적용에 관한 이의사항 및 의문발생시
- 2)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
- 3) 기타 평가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다. 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, 위원 3인으로 구성하고, 평가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.

#### 6. 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

가.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이 기재되어있지 않을 경우 경력 산정에서 제외하며, 경력증명서 갑지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가 기재 되어있지

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.

- 나.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(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)에 따르며, 유사용역수행실적, 경영상태, 업무중첩도,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,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다. 적격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스스로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(원본1, 부분1)에 편철하여 제출해야하며,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.

### III. 세부평가기준

#### 1.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

##### 가. 일반사항

- 1) 참여자격 : 참여평가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재직사실이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.

구 분	기술자격 요건		필수 교육 이수자	비고
	사업책임기술인	분야별책임기술인		
재해영향성 검토	특급	고급	사업책임기술인, 분야별책임기술인	

- 2) 경력 및 실적인정 :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 증명서상의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중복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  -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발행한 “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” 상 주요경력/참여기간(인정일) 중 “인정일”로 계산한다.
- 3)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

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발주처, 사업명, 직무분야, 해당 전문분야,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하며,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처, 사업명 등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·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.

- 4) 사기업(私企業)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.
- 5)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평가대상 사업은 전체 준공한 용역사업으로 한정한다.(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용역 및 차수준공 용역은 제외)

6) 평가대상 기술인

순 번	용 역	평가대상기술인(인)		비 고	
		계	책 임		분 야
			수자원개발		토질지질
1	재해영향성검토	2	1	1	책임기술인과 분야기술인 분야 중복 불가

나. 자격 또는 등급 평가기준

- 1)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(제4조 관련)의 기준에 따라 자격은 직무 분야에 대하여 평가하며, 등급은 전문분야에 대하여 평가한다.

구 분			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	비고
인 원 수			각 1인	
참여분야			수자원개발, 토질지질	
자격	직무분야	토목	사업책임 : 특급이상 분야별책임 : 고급이상	
등급	전문분야	수자원개발, 토질지질	배점표에 따라 차등평가	

다.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기준

- 1) 시행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
- 2)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경력 일수를 차등 계산

용역의 종류	참 여 분 야	평가
·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방재 관리대책업무 및 용역	· 용역수행 경력 · 발주처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	100%
· 설계* 중 해당 전문분야 경력	· 용역수행 경력 · 발주처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	80%

\* 국토교통부(지방국토관리청, 지방항공청 이하 “국토교통부”라 한다),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, 새만금개발청, 광역자치단체, 한국도로공사, 국가철도공단,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중 해당 전문분야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

3)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한 후 1년을 365일로 계산하며 평가경력 연수(年數) 계산 시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

## 라.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기준

- 1) 시행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
- 2)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실적 일수를 차등 계산

용역의 종류	참 여 분 야	평가
·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방재 관리대책업무 및 용역	· 용역수행 경력 · 발주청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	100%
· 설계* 중 해당 전문분야 경력	· 용역수행 경력 · 발주청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	80%

\* 국토교통부(지방국토관리청, 지방항공청 이하 “국토교통부”라 한다),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, 새만금개발청, 광역자치단체, 한국도로공사, 국가철도공단,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중 해당 전문분야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

3) 각각의 실적일수를 합산한 후 1개월을 30일로 계산하며 평가실적 월수 계산 시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

## 2. 참여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(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)

가. 유사용역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으로 방재관리대책업무(재해영향성검토, 재해영향평가,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계획 수립,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, 우수 유출저감대책 수립, 재해복구사업의 분석·평가, 비상대처계획 수립) 중 건당 전체 준공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.(공고일 기준 전체분에 대하여 준공되지 않은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)

나. 유사용역의 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사업건수 및 금액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(건수 및 금액)은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.

다. 사기업(私企業)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.

### 3. 경영상태 평가(5천만원 미만 용역에 적용)

- 가.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“기업경영분석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. 다만,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.
- 나.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“기업경영분석” 자료를 적용하되 입찰 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.

### 4. 용역업무 중복도

- 가. 용역업무 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0일이상인 모든 용역(비상주 감리 제외)을 대상으로 평가하며, 평가대상인 사업 책임기술인 1인,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에 대하여 각 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그 기간에 따라 아래의 배점기준에 의해 평가하며, 잔여과업 중 공동도급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을 반영하여 기간을 산정한다. ※ 1개월은 30일로 계산

1년(12개월)이하	1년(12개월)초과 2년(24개월)이하	2년(24개월)초과 3년(36개월)이하	3년(36개월)초과
1건	2건	3건	4건

- 나. 업무 중복 내용은 참여 기술인이 참여 중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하며, 관련기관(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)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기술인의 업무 중복도 평가점수는 최저 점수로 처리한다.

### 5. 신용도

- 가. 입찰참가 제한기간

#### 1) 용역업자

최근 1년간(공고일 기준)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 참가제한 및 업무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(30일)마다 배점의 10%씩 감점한다.(1월 이상 30일 이하 : -0.2, 31일 이상 60일 이하 : -0.4, ...)



## 2) 참여기술인

최근 1년간(공고일 기준) 관계법령에 기술인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(90일)마다 10%씩 감점한다.(1일 이상 90일 이하 : -0.2, 91일 이상 180일 이하 : -0.4, ...)

## 6. 재해영향성검토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표

평가항목	세부평가사항	배점기준	평가기준				
계		100					
참여기술인	소계	50	○ 자격 - 토목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이상				
	- 사업책임기술인	25					
	·기술인등급 (수자원 개발)	(7)	특급	고급	중급	초급	
			7	5	3	0	
	·경력	(8)	12년이상	10년이상	8년이상	6년이상	6년미만
			8	6	4	2	0
	·용역실적	(10)	120개월이상	108개월이상	96개월이상	84개월이상	84개월미만
			10	8	6	4	2
	- 분야별 책임기술인	25	- 사업 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				
	·기술인등급 (토질 및 지질)	(7)	고급	중급	초급		
			7	5	3		
	·경력	(8)	9년이상	7년이상	5년이상	5년미만	
8			6	4	2		
·용역실적	(10)	84개월이상	72개월이상	60개월이상	60개월미만		
		10	8	6	4		
유사용역 수행실적 (5천만원 이상용역에 적용)	- 용역업자수행실적	34	-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				
	·용역수행건수	(17)	6건이상	4건이상	2건이상	2건미만	
			17	13	9	5	
	·용역수행금액	(17)	3억원이상	2억원이상	1억원이상	1억원미만	
17			13	9	5		
경영상태 (5천만원 미만용역에 적용)	- 경영상태	34					
	·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(자기자본/총자산)/ 기준비율	(17)	100%이상	90%이상	80%이상	70%이상	70%미만
			17	15	13	11	9
	·최근년도유동비율 (유동자산/유동부채)/ 기준비율	(17)	100%이상	90%이상	80%이상	70%이상	70%미만
17			15	13	11	9	
용역업무 중복정도	- 용역업무 중복도	12	-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				
	·용역업무 중복도	(12)	1건이하	2건이하	3건이하	4건이상	
			12	8	4	0	
신용도	- 신용도	4	- 최근 1년이내 해당 용역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				
	·입찰참가제한	(2)	·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% 감점				
	·기술인업무정지	(2)	·평가대상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% 감점				

## IV. 적격업체 심사자료 작성 요령

### 1. 용역개요

- 공고문 참조

### 2. 제출서류(제본순서)

- 신청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.

- 1) 표지[서식 1]
- 2) 적격심사신청서[서식 2]
- 3)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[서식 3]
- 3)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사본
- 4)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[서식 4]
- 5) 참여기술인 총괄[서식 5]
  - \*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첨부(공고일 기준)
- 6) 참여기술인 자격, 경력, 실적[서식 6]
- 7) 참여기술인(사책, 분책, 분참) 경력증명서
- 8)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[서식 7]
- 9) 참여기술인 교육수료증
- 10) 업체의 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(5천 이상)[서식 8]
- 11) 업체의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및 실적 산출 계산서
- 13) 경영상태 실적(5천 미만)[서식 9]
- 14) 기업경영평가분석자료 등 증빙서류
- 15) 입찰참가자격제한, 업무정지, 기술자격정지 등[서식 10]
- 16) 입찰참가자격제한, 업무정지, 기술자격정지 등 확인서
- 17)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첩도[서식 11]
- 18)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 산출근거[서식 12]

\* 경력 및 실적증명서 등 근거자료는 각 서식 바로 뒤에 첨부토록 한다.

\*\* 첨부서류 서식5는 엑셀 전산파일(CD 또는 USB 등)로 반드시 제출

### 3.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

가.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.

나. 제출부수 : 2부(원본 1부, 부분 1부), 규격 : A4(210cm × 296cm), 좌철

### 4. 기타사항

가.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우리 과에서 교부한 작성 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하며, 작성안내서 상 각 항에서 첨부하도록 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불인정한다.

나. 제출 기간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.

다. 제출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.

라. 모든 자료 작성일은 **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.**

마. 용역참여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임의 처리한다.

바.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, 변조,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)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.

2) 계약 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사.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,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건설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.

[서식 1]

국 철	토 도	교 건	통 설	부 과
---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--

관 리 번 호	
------------------	--

사업수행능력 적격심사 자료  
(용역명)

2022. 0.

○ ○ ○ ○(주)

담당자	직장전화번호	긴급연락처	팩스(FAX)번호
○○○	○○○-○○○-○○○○	○○○-○○○-○○○○	○○○-○○○-○○○○

[서식 2]

## 적격심사신청서

- 용역명 :
- 발주기관 :
- 입찰일시 :

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,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(회계예규)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.

입찰자 주소 :  
회사명 : (TEL. )  
대표자 : (인)

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

**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장 귀하**

[서식 3]

##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

### 1. 심사대상용역

공고번호	
입찰일시	
용역명	
용역기간	
수요기관	
입찰금액	
예정가격	
제출기한	

### 2. 심사대상입찰자

업체명	(전화)
대표자	
업종구분	건설사업관리( ), 설계( ), 기타( )

### 3.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

소속	
직위	
성명	
전화번호	(Fax)

### 4. 종합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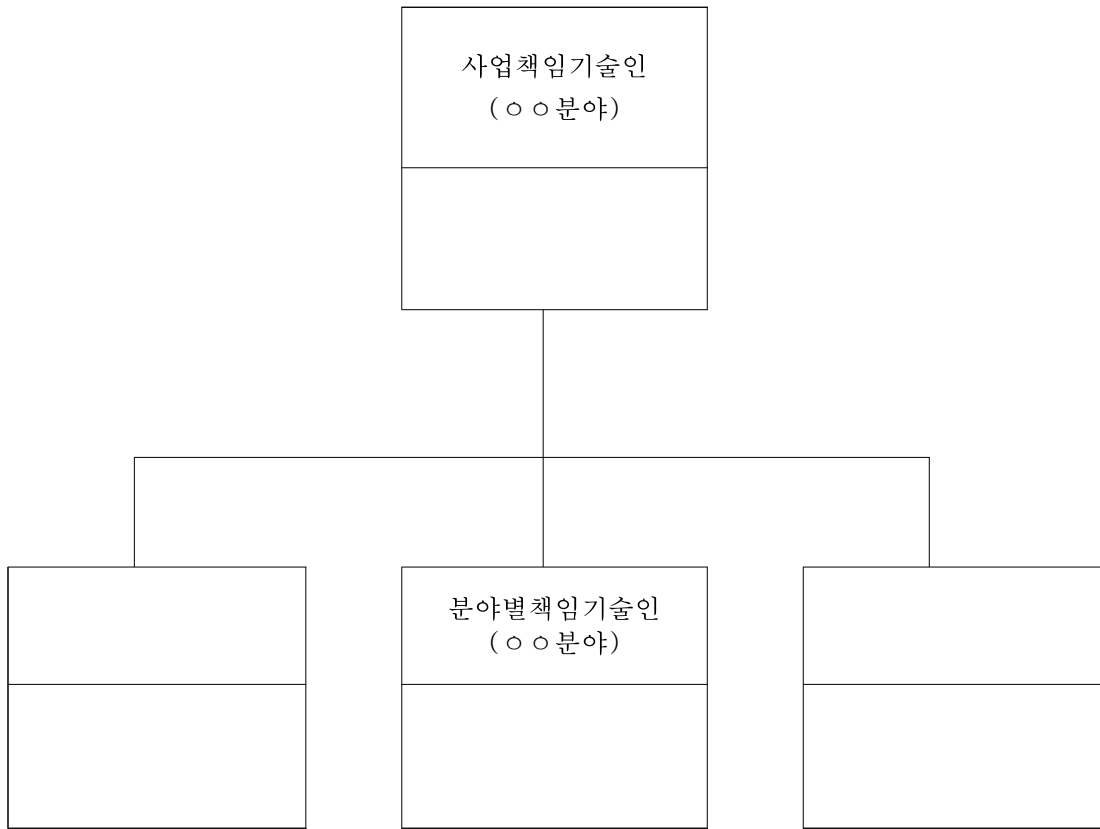
구분	배점	자기평점	심사평점	
계	100			
참여기술인(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)	50×30/100			
유사용역수행실적 (5천만원이상 용역에 적용)	34×30/100			
<table border="1" style="display: inline-table; vertical-align: middle;"> <tr> <td>경영상태 (5천만원미만 용역에 적용)</td> <td>자본비율 :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유동비율 :</td> </tr> </table>				경영상태 (5천만원미만 용역에 적용)
경영상태 (5천만원미만 용역에 적용)	자본비율 :			
	유동비율 :			
업무중복정도	12×30/100			
신용도	4×30/100			
입찰가격	70			
결격사유	-40			

※ '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표'에 의한 자기평점 근거 첨부할 것.

※ 수행능력 평점산식 :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

※ 입찰가격 평점산식 :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

##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





## 참여기술인 총괄

구	분	분	야	등급	주민등록 번호	자 격 내 용			학 력 내 용		소 속 회 사	비 고
						자격명	취득일	번호	최종 학 력	취득일		
사	업	○ ○ ○	○ ○ 분 야									
분	야	○ ○ ○	○ ○ 분 야									
책	임											
기	술											
인												

첨부 : 1. 자격증 사본  
2. 기술인 경력확인서 1부.

※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 1인, 분야책임 1인으로 구성하며, 중복되어서는 아니 됩니다.

## 참여기술인 자격, 경력, 실적

### 1. 인적사항 및 등급

성 명		소속회사		주민번호 (연령)	(만 세)
기술등급	직무분야		전문분야		
	- 특급, 고급, 중급, 초급으로 구분				
자격증 (분야및종류)			금 회 참여분야		
경 력	1059일÷365일= 2.9년		실 적	840일÷30일= 28개월	
자격정지	개월(“해당없음”은 표시)				

### 2. 경력

연번	사업명	구분 (해당 분야)	참여기간			환산일수(경력)		발주청	직무 분야	전문 분야	담당 업무	해당 페이 지
			착수	준공	인정일 (A)	인정율 (%) (B)	인정 기간 (C)					
	산정결과						<b>2.3년</b>	1년=365일				
<b>계</b>	<b>권</b>						<b>1059</b>	<b>1059/365</b>				
1	00 재해영향성검 토용역	수자 원	2008. 01.01	2009. 12.31	365	100%	365	XX 국도	토목	수자원 개발		p.171
2	00소하천 실시설계용역	수자 원	2009. 01.01	2010. 06.30	182	80%	145.6	00시	토목	수자원 개발		p.172
3	00지방하천 실시설계용역	수자 원	2010. 01.01	2011. 12.31	184	60%	110.4	XX 국도	토목	수자원 개발		p.173
4	00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	수자 원	2011. 01.01	2012. 06.30	365	60%	219	00도	토목	수자원 개발		p.174

### 3. 실적

연번	사업명	구분 (해당 분야)	참여기간			환산일수(경력)		발 주 청	직무 분야	전문 분야	담당 업무	해당 페이 지
			착수	준공	인정일 (A)	인정율 (%) (B)	인정 기간 (C)					
	산정결과						<b>2.3년</b>	1년=365일				
<b>계</b>	<b>건</b>						<b>1059</b>	<b>1059/365</b>				
1	00 재해영향성검 토용역	토질 지질	2008. 01.01	2009. 12.31	365	100%	365	XX 국도	토목	토질 지질		p.171
2	00소하천 실시설계용역	토질 지질	2009. 01.01	2010. 06.30	182	80%	145.6	00시	토목	토질 지질		p.172
3	00지방하천 실시설계용역	토질 지질	2010. 01.01	2011. 12.31	184	60%	110.4	XX 국도	토목	토질 지질		p.173
4	00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	토질 지질	2011. 01.01	2012. 06.30	365	60%	219	00도	토목	토질 지질		p.174

### 5. 교육훈련 실적

참여기술인		교육구분	교육과정명	교육기간		비고
분야	성명			시점	종점	
사업책임 기술인				2010. 01.01	2011. 12.31	( 주)
분야별책임 기술인						
점수						

##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

신 청 인	업 체 명 (상호)				대 표 자	
	영 업 소 재 지				전 화 번 호	
	사 업 자 번 호				입찰공고번호	
	증 명 서 용 도	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			제 출 처	
	용역범위 및 기준 (면적,금액등)					
용역이행 실적내용	용 역 명				구 분	설계( ) 건설사업관리( ) 기타( ) :
	용 역 개 요					
계 약 번 호	계 약 일 자	계 약 기 간	규 모	이행실적		비 고
				비 율	실 적	
증 명 서 발급기관	위 사실을 증명함					년 월 일
	기 관 명 :			(인)	(전화번호 : )	
	주 소 :			(FAX번호: )		
	발급부서 :			담당자 :		

※ 작성요령

※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,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

※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(면적, 금액등)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,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

※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

###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(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)

연번	사업명	구분	참여기간		발주처	실적		지분율 %	적용실적		비고 (공동 도급 자명, 총준 공금액)	해당 페이 지
			착수	준공		건수 (A)	준공금액 (백만원) (B)		건수 (A*C)	금액 (백만원) (B*C)		
<b>산정결과</b>												
<b>계</b>						<b>4</b>	<b>250</b>		<b>3.1</b>	<b>240</b>		
1	00 재해영향성검토 용역		2008. 01.01	2009. 12.31	XX 국도	1	100	100%	1	100	100	p171
2	00소하천 실시설계용역		2009. 01.01	2010. 06.30	00시	1	70	80%	0.8	56		p171
3	00지방하천 실시설계용역		2010. 01.01	2011. 12.31	XX 국도	1	60	60%	0.6	36		p171
4	00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		2011. 01.01	2012. 06.30	00도	1	80	60%	0.8	48		p171

- ※ 공공관리주체(발주기관)로부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함
- ※ 과업개요 란에는 용역 시설물 등을 정확히 기재
- ※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비율대로 반영하며 하도급은 불인정
- ※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, 총 준공금액을 기재
- ※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
- ※ 국가 및 공공기관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5호의 "발주청"을 말함

[서식 9]

## 경영상태(5천만원 미만 용역에 적용)

·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

(단위 : 백만원)

1. 회사명			
2. 주소			
3. 전화번호			
4. 설립년도			
5. 자본금			
6. 경영실적			
자기자본비율		유동비율	
자기자본금		유동자산	
총 자산		유동부채	
자기자본비율	%	유동비율	%
<p>○ 자기자본 비율 = 자기자본 ÷ 총자산 =</p> <p>○ 유동자산 비율 = 유동자산 ÷ 유동부채 =</p>			

※ 증빙서류 첨부 (한국은행 발행 “기업경영평가분석” 사본)

※ 합계(평균)는 총 금액에 대한 연간 평균수치임.

※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

※ 반드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,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하로 평가함

**입찰참가자격제한, 업무정지, 기술자격정지 등 현황(신용도 평가)**

구분	업 체 명 참여기술인	처분 종류	기간			사유	관계법령	처분청	비고
			시점	종점	환산 (월)				
용역 업자			2010. 06.01	2010. 08.31	3				
	계								
참여 기술인									
	계								

- ※ 업체 및 평가대상 기술인은 최근 1년간(공고일기준)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,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.
- ※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.
- ※ 각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
- ※ 첨부서류 : 각 관련수탁기관의 부실벌점 및 제재확인서

## 참여기술인 업무 중첩도

구분	성명	용역업무 참여현황							비고 (용역중단 여부 등)
		용역명	발주청	용역비 (백만원)	참여기간				
					분야	참여 기간	중복 기간	중복 일수	
사 업 책 임 기술인									
	계	건							
분야별 책 임 기술인									
	계	건							

- ※ 참여기간은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실용역 전체기간(장기계속 등)을 기재
- ※ 현재 진행중인 공공기관 발주용역 중 잔여기간이 공고일 현재 1개월(30일)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
- ※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, 분야 책임기술인 모두 기재
- ※ 참여기술인의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
- ※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점수는 최저점수로 처리
- ※ 공동도급으로 수행중인 경우 지분율이 표기된 발주청 실적증명 별도 첨부



## 자기평가 산출근거

평가 항목	세부평가사항	배점 기준	평가 기준	평가 점수	산출근거	
계		100				
참여 기술인	소계	50	○ 자격 - 토목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이상	15	(예시)	
	- 사업책임기술인	25				
	·기술인등급 (토목 전문분야)	(7)	특급	고급	중급	초급
			7	5	3	0
	·경력	(8)	12년이상	10년이상	8년이상	6년이상
			8	6	4	2
	·용역실적	(10)	120개월 이상	108개월 이상	96개월 이상	84개월 이상
			10	8	6	4
	- 분야별 책임기술인	25	- 토목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			
	·기술인등급 (토목 전문분야)	(7)	고급	중급	초급	
			7	5	3	
	·경력	(8)	9년이상	7년이상	5년이상	5년미만
8			6	4	2	
·용역실적	(10)	84개월이상	72개월이상	60개월이상	60개월미만	
		10	8	6	4	
유사용역 수행실적 (5천만원 이상용역에 적용)	- 용역업자수행실적	34	-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			
	·용역수행건수	(17)	6건이상	4건이상	2건이상	2건미만
			17	13	9	5
·용역수행금액	(17)	3억원이상	2억원이상	1억원이상	1억원미만	
		17	13	9	5	
경영상태 (5천만원 미만용역에 적용)	- 경영상태	34				
	·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(자기자본/총자산)/ 기준비율	(17)	100% 이상	90% 이상	80% 이상	70% 이상
			17	15	13	11
·최근년도유동비율 (유동자산/유동부채)/ 기준비율	(17)	100% 이상	90% 이상	80% 이상	70% 이상	
		17	15	13	11	
용역업무 중복정도	- 용역업무 중복도	12	-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			
	·용역업무 중복도	(12)	1건이하	2건이하	3건이하	4건이상
12			8	4	0	
신용도	- 신용도	4	- 최근 1년이내 해당 용역분야와 관련한 제재 사항			
	·입찰참가제한	(2)	·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% 감점			
	·기술인업무정지	(2)	·평가대상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 마다 배점의 10% 감점			

※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

- 가.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,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
- 나.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“만점”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
- 다.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 
(경력외의 경우,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않고,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,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)
- 라.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 
([예시]경력외의 경우,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)
- 마. 자기평가서 내 공란은 파란색으로 채우시기 바람.